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외장학금 운영 지침

제정 2020. 5. 11.

1. 목 적

교육부 「교외장학금 운영 가이드라인」 및 「서울대학교 교외장학금 관리지침」에 의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 교외장학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설명

- 1) ‘교외기관’은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개인, 단체 등으로 구분한다.
- 2) ‘교외장학금’은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농생대 발전 기금,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포함)을 말한다.

3. 장학생 선발·추천 원칙

교외장학생 선발·추천 시 아래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1)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 교외기관이 제시한 선발·추천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 그 기준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기준을 교외기관에 재요청한다.

2)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학업 의지가 탁월한 학생 중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되,
- 학업성적 기준은 학사과정 직전학기 평점평균 2.7이상, 대학원과정 직전학기 평점평균 3.3이상으로 한다. 단, 기준 성적에 미달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3) 교외기관이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 교외기관의 선발·추천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자료

(기부금 약정서, 추천요청서 등)와 교외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붙임1. 확인서(양식) 등)를 교외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 지정한 특정학생의 선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를 교외기관에 재요청하거나, 선발·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4. 장학생 추천서 발급

교외 장학생 지원 또는 추천 시 총장(학장)의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원/추천 학생의 소속 전공 교수가 장학생 지원 자격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학부(과)장을 통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5.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교외기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교외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자
- 3)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등

6. 장학금 수혜 보고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수혜사실을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장학생 추천·선발 결과의 보고·심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학위원회는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보고 받고, 심의 한다.

8. 기타 사항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교외장학금 운영 관련 사항은 교육부「교외장학금 운영 가이드라인」 및 「서울대학교 교외장학금 관리 지침」을 따른다.

붙임 1. 교외재단 확인서(양식)

2. 학장 추천서(예시)

부칙(제140호, 2020.05.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확 인 서

재단명	
장학금 지원 학년도-학기	20 학년도 학기
본 재단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본 재단과 지정한 특정학생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재단명: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	

장학생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 . .
학교명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번	-
소속	학부(전공)	과정(학기)	과정(학기)

위 학생을 20 학년도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지도교수/학부장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인)